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발명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문승욱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4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그간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을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으로 지정·운영해왔으나, 산업재산권 정보화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발명진흥법」이 개정(법률 제18816호, 2022. 2. 3. 공포, 8. 4. 시행)됨에 따라, 한국특허정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 등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.

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특허공제사업 수탁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,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제도 폐지에 따른 시행령 정비 및 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범위 규정 등(안 제8조의3 등)

- 1)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 요건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.
- 2) 개정법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정하고, 수익사업을 시작하거나 중단할 경우 미리 특허청장에게

보고하도록 함.

- 3) 한국특허정보원이 아닌 자가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, 이러한 위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.

나. 특허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·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28조의5 신설)

- 1)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('19.4월) 결과, 특허공제사업 수탁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및 재지정 요건 등이 모호하여 제도 개선이 권고되었음.
- 2) 권익위 권고에 따라, 모호하게 규정된 수탁기관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.

다. 과잉행정 방지를 위해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 기준 구체화(별표1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나목의 단서 신설)

- 1)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(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-95호, 2021. 2. 22. 의결)에 따라, 행정제재 가중처분 시 누적회차 적용 기준 마련이 권고되었음.
- 2) 이에 따라,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표11 제1호나목의 단서를 신설하여 가중처분 적용 여부에 대해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의3(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등) ① 법 제20조의3제5항에서
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
2.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연구용역
3. 산업재산권 정보화 전략 수립 및 정보시스템 보급
4.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교육, 출판 및 행사
5.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정보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서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한국특허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1. 삭 제
2. 삭 제
- ③ 삭 제
- ④ 삭 제

⑤ 삭 제

⑥ 삭 제

⑦ 삭 제

제8조의4를 삭제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정보화전문기관과 법 제34조”를 “법 제34조”로, “정보화전문기관의 설립·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산업재산권”을 “산업재산권”으로 한다.

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를 각각 제28조의6부터 제28조의9까지로 하고, 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5(위탁기관의 지정 등) ① 특허청장은 법 제50조의5 및 영 제28조의4에 따라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성, 사업역량 등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.

③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, 평가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④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

2.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
3. 제2항에 따른 전문성, 사업역량 등 사업수행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⑤ 기타 수탁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수탁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별표 2를 삭제한다.

별표 11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별표 11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법 제2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 한 경우	법 제60조제1항제3호	100	250	500
--	--------------	-----	-----	-----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3(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 등)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(이하 “정보화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 1.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. 법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(이하 “산업재산권 정보화 업무”라 한다)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. 삭 제 4.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정보화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화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	제8조의3(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 사업 등) ① 법 제20조의3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1.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2.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연구용역 3. 산업재산권 정보화 전략 수립 및 정보시스템 보급 4.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교육, 출판 및 행사 5.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정보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서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한국특허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 1. 삭 제

해야 한다.

1.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
2. 산업재산권 정보화업무를 수행한 실적(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
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

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산업재산권 정보화업무 수행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.

⑤ 특허청장은 정보화전문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⑥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보화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할 수 있다.

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와 제4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업무 수행 실

2. 삭 제

③ 삭 제

④ 삭 제

⑤ 삭 제

⑥ 삭 제

⑦ 삭 제

적 판단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
과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 및
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
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8조의4(정보화전문기관에 대한
행정처분 기준 등) ① 법 제20
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화전문
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
에 관하여 법 제9조의2제4항을
준용하는 경우 정보화전문기관
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
표 2와 같다.

②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3제3
항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의 지
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
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
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
게재하여야 한다.

제10조(출연금의 사용) ①정보화
전문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른
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법
제20조의3제5항과 법 제34조제
3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
았으면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
따라 정보화전문기관의 설립·
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

<삭 제>

제10조(출연금의 사용) ①법 제34

조-----

--- 산업재산권-----

경비와 산업재산권의 알선업무
를 위한 사업에 따르는 비용에
만 사용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8조의5(위탁기관의 지정 등)

① 특허청장은 법 제50조의5 및
영 제28조의4에 따라 특허공제
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
있는 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지정
할 수 있다.

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
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
성, 사업역량 등 사업수행능력
을 평가하여야 한다.

③ 특허청장은 위탁기관에 대하
여 5년마다 사업수행능력 등을
평가하여야 하며, 평가 결과에
따라 위탁기관을 재지정하거나
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④ 특허청장은 위탁기관이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
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그
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
선정된 경우

<u>제28조의5</u> ~ <u>제28조의8</u> (생략)	2. <u>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</u> 3. <u>제2항에 따른 전문성, 사업역량 등 사업수행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/u> ⑤ <u>기타 수탁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수탁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 <u>제28조의6</u> ~ <u>제28조의9</u> (현행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와 같음)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	
연 락 처	(042) 481 - 5154